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발행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 2021년 8월을 홍보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가이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협회 홈페이지 정보마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데 참고할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이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의 생명·건강 보호는 경영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2020년 한 해에만 2,062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이하 생략)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 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 헌법재판소 2007.8.30.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22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122p 참고) 경영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4. 생략

산업안전보건관리!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 과거에는 안전보건 감독을 받거나 산재가 발생하고 나서야 문제를 해결하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관행이 일반적이었습니다.

- 산업재해 예방 목적이 아닌 형벌이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안전보건 활동을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 하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와 손실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임기응변식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합니다.

-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 기업별 작업환경과 재정적·기술적인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 가이드를 활용하여 기업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요?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아래 7가지 핵심요소를 고려하여 구축합니다

1. 경영자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2.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작업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4. 위험요인을 제거·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5. 급박히 발생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6.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이렇게 구축하세요!

- ✔ 기업에 따라 보유한 기계·기구 및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모두 다르므로 기업 여건에 맞게 구축합니다.
- ✔ 기술적 역량이 부족하고,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기업은 기초적인 안전보건 조치부터 시작합니다.
- ✔ 공정이 복잡하고 위험요인이 많은 기업은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전통적 안전보건 활동 vs 안전보건관리체계

	전통적 안전보건 활동	안전보건관리체계
동기	처벌 회피 ➡ 수동적	성과 달성 ➡ 적극적
책임	안전보건 담당자	경영자
평가	외부점검(고용노동부 등)	자체 점검
목표	처벌 회피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소규모 사업장에서 즉시 할 수 있는 안전보건 응급조치

❶ '안전보건'을 경영방침의 핵심가치로 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알립니다.

❷ 작업환경을 최대한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고 정돈합니다.

❸ 주요 작업현장, 휴게시설에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위험한 기계·설비, 장소에 안전 표지판을 부착합니다.

❹ 작업 전 안전미팅, 안전제안 활동, 아차사고 신고 등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절차를 도입합니다.

❺ 모든 구성원이 사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해 격의 없이 논의하며, 논의결과를 기록하고 공개합니다.

❻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사고사례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❼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적인 직원을 포상합니다.

❽ 안전보건 활동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

❾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안전보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❿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산업재해를 가정하고, 모든 구성원이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여기서 잠깐

주요 사망사고 원인과 기본적인 안전수칙

지난 3년간('18년~'20년) 산재사망사고 2,011건(2,041명)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추락 방지 시설 등 안전시설 미설치 1,059건(52.7%), 작업방법 미준수 737건(36.6%), 작업 절차 미수립 710건(35.3%),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미지급·미착용 601건(29.9%)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작업방법 준수 및 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만으로도 대부분의 산재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규모 사업장은 정부로부터 시스템비계, 방호기구 등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① 경영자 리더십	→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합니다. →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인력·시설·장비)을 배정합니다. →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를 독려합니다.
② 근로자의 참여	→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③ 위험요인 파악	→ 위험요인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합니다. → 위험기계·기구·설비 등을 파악합니다. → 유해인자를 파악합니다. →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④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 위험요인별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합니다. →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⑤ 비상조치 계획 수립	→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 '재해 발생 시나리오' 별 조치계획을 수립합니다. → 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합니다.
⑥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시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⑦ 평가 및 개선	→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합니다. → 발굴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합니다.